

동화고등학교규칙

[2023.10.26. 개정]



동화고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동화 고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 ②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동화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1.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경천애인) 2.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실력있는 사람(실력인) 3. 건강하고 단련된 체력을 지닌 사람(건강인) 4. 이웃을 사랑하며 봉사할 줄 아는 사람(봉사인) 5.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창조·개척하는 사람(개척인)을 기르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동화고등학교라 칭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34(도농동, 동화중고등학교)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학년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다만 학교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8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6월 5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휴업일
7.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 기간은 제14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 및 졸업

제11조(교육과정 편성·운영)

-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제12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간 교류학습 및 가족동반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⑤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20일 이내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달간의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류 및 위탁교육 수용교는 교류 및 위탁 기간 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⑦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⑧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출결처리)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교외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연간 20일 이내, 교환(위탁)학습 : 연간 1개월 이내)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7.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제14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 ③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④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제17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

제18조(입학시기)

-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9조(입학방법)

-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지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입학 전형을 실시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 ② 입학 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하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 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20조(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전·편입학)

- ①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시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되, 학제 차이(외국 가을학기 시작)로

인한 1학기(6개월)의 중복인정 등 상세 계산은 경기도교육청 업무 시행 지침에 따른다.

③ 본교의 전·편입학 방법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2조(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 학교장에게 휴학원을 출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자퇴 및 학업중단 예방)

- ① 스스로 퇴학(자퇴라 한다. 타 학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후 절차는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24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제28조(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9장 학생포상·학생훈육 및 징계

제29조(학교생활규정)

-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 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학생포상)

-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 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2조(학생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33조(퇴학처분)

-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위반한 자
-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학생의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10장 학생자치·학부모회 조직 및 운영

제35조(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화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제36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학부모회 조직·운영)

-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화고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38조(학칙개정 절차)

-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하여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 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3.10.26. 동화고 공고 제2023-1호)
- 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③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